

의안번호	2201952
의 퇴 인	성일종 의원
회 답 일	2024. 8. 26.
추계번호	24B2139

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3조제1항 (재정지원 등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, 중수도,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, <u>온배수</u> ¹⁾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 * 설치비용 보조/융자 대상에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추가	재량규정
2	안 제23조제2항 (재정지원 등)	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·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또는 <u>온배수</u>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음 * 수도요금 등 경감 대상에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 추가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3조제1항 (재정지원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23조제2항 (재정지원 등)	

1) 안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6의2. “온배수”란 취수원 해수를 발전소(원자력발전소는 제외한다)의 발전과정 또는 산업시설의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하여 수온이 상승된 상태로 방출되는 배출수를 말한다.

2. 상세 사유

□ 온배수 재이용시설 설치자 및 온배수 재처리수 이용자에 대한 재정지원 (안 제23조)

-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, 지방자치단체가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, 온배수 재이용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와 수도요금 등 경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나 다음의 사유로 추계가 어려움
- (안 제23조제1항) 온배수 재이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개수, 규모, 설치 단가 및 지원율 등의 정보가 필요
 - －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은 설치 지역의 수질 및 입지 조건과 사업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함
- (안 제23조제2항) 온배수 재처리수 공급에 대한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 경감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감소 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온배수 재처리수의 공급 대상, 규모, 감면율 등의 정보가 필요
 - － 수도요금은 지역마다 부과체계가 다르고, 개정안에서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 경감과 관련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음
- 참고로, 현행법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재이용시설, 중수도 재이용시설 등의 설치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을 하고 있고, 하수처리수 등을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도요금 등을 감경하고 있는데 일부 사례는 다음과 같음

[표 1]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사례

지원대상	사업내용	총사업비(총국비)	사업기간	비고
김제시	체육관에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 및 빗물저류조 2개소(230톤) 설치	3.4억원 (2.4억원)	‘19~’20	완료
제주도	농업용수로 빗물 이용을 위한 시설 및 저류조(5,000톤) 설치	288.3억원 (168.0억원)	‘24~’28	설계중

자료: 환경부

[표 2] 중수도 설치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사례

지원대상	사업내용	총사업비(총국비)	사업기간	비고
진주시	한국세라믹기술원(100m³/일), 진주종합경기장(60m³/일), 진주실내수영장(60m³/일) 등 총 3개 건축물에 중수도 설치	52.0억원(31.0억원)	‘21~’23	완료
창원시	창원스포츠파크(290m³/일), 진해구청&사회복지관(115m³/일), 의창스포츠센터(105m³/일) 등 총 3개 건축물에 중수도 설치	91.7억원(45.9억원)	‘19~’24	공사중

자료: 환경부

[표 3] 하수처리수 설치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사례

지원대상	사업내용	총사업비(총국비)	사업기간	비고
여수시 (민간투자사업)	여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50,000m³/일 용량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공급관로 L=18.6km 설치 등	785.9억원 (410.5억원) ※ 민간투자비 : 329.1억원	‘20~’25	공사중
상주시	상주 청리일반산업단지 14,500m³/일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공급관로 L=14.3km 설치 등1)	266.2억원 (159.7억원)	‘24~’27	설계중

주 1)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의 원수로 공급하기 위한 관로를 설치하는 하수 재이용 사업

자료: 환경부

[표 4]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 경감 관련 조례 및 감면 사례

지자체	감면 조례	2023년 감면액(원)
부산광역시	<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> 제8조(요금 등의 경감) ① 시장은 법 제23조 또는 이 조례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·관리자와 하수처리수 및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수도요금(물이용부담금 포함)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.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중수도 외에 기존에 설치·운영중에 있는 중수도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.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외에 기존에 설치·운영중에 있는 빗물이용시설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한 경우 수도요금(물이용부담금 포함)을 경감할 수 있다.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에 대하여는 「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」 또는 「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에 따른다.	11,057,580
대구광역시	<대구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> 제8조(요금 등의 감면)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, 관리자 또는 하·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수도 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 ② 수도요금과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대하여는 「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」 및 「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에 따른다.	104,036,570

자료: 환경부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박인재	배아형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인재	02-6788-4650	powerreset@nabo.go.kr